

◆ 23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객관식 정오표

-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오탈자 등은 제외

Page 13. 제1장 문제10번. 해설 표 안

오류 수정 전

옥내저장소 면적 제한 〈★기능장〉	단층 : 면적 2,000㎡ 이하	단층 : 면적 1,000㎡ 이하
	다층 : 면적 합계 1,000㎡ 이하	다층 : 저장 불가
	복합용도 : 면적 75㎡ 이하, 지정수량 20배 이하	유별 품명의 제한 없음

오류 수정 후

옥내저장소 면적 제한 〈★기능장〉	단층 : 면적 2,000㎡ 이하	단층 : 면적 1,000㎡ 이하
	다층 : 면적 합계 1,000㎡ 이하	다층 : 저장 불가
	복합용도 : 면적 75㎡ 이하, 지정수량 20배 이하	

Page 163. 제2장 문제63번. 해설 표 안 / Page 353. 제7장 문제11번. 해설 표 안

법령 개정. 시행 '23. 4. 25.

◆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		
구분	행정처분 : 취소, 사용·업무정지 (♣규칙 [별표 2])	과태료 부과처분 (♣영 [별표 9])
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 2년간 ■ 같은 위반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 1년간 ■ 같은 위반행위
기간의 계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
횟수에 따라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음 차수 ■ 기간 내 처분이 둘 이상 : 높은 차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음 차수 ■ 기간 내 처분이 둘 이상 : 높은 차수
감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용정지·업무정지인 경우 ↳ 감경 : 2분의 1 범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상공인 아닌 경우 ↳ 감경 : 2분의 1까지 ↳ 감경 제외 : 고의, 중과실 ↳ 감경 제외 : 체납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★개정. 시행 '23. 1. 5.> ■ 지정취소·등록취소인 경우 ↳ 감경 : 6개월의 업무정지 ↳ 감경 불가 : 취소 사유의 1. 2. 3호 (=처분 1차의 취소 사유인 경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★개정. 시행 '23. 4. 25.> ■ 소상공인 경우 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해당자) ↳ 감경 : 100분의 70 범위 ↳ 감경 제외 : 고의, 중과실 ↳ 감경 제외 : 체납자

Page 252. 제4장 문제13번.

오류 수정 전

13.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 중에서 액체 위험물의 내장용기의 재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오류 수정 후

13.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 중에서 액체 위험물의 용기의 재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Page 352. 제7장 문제11번. 해설 표 안

법령 개정. 시행 '23. 4. 25.

◆ 시행령 [별표 9] :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**2분의 1까지**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**체납**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**그러하지 아니하다**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**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**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**처음 위반행위**를 한 경우로서 **3년 이상**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**사소한 부주이나 오류** 등 **과실**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**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**을 받은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**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**하거나 **해소**한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<나목 신설 2023. 4. 25>

나. 부과권자는 **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**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**소상공인**에 해당하고, 과태료를 **체납**하고 있지 **않은**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**100분의 70 범위**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
- 1) 위반행위자의 **현실적인 부담능력**
- 2)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**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**

<기존 나목 → 다목 개정>

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**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**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**기간의 계산**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**적발된 날**을 기준으로 한다.

<기존 다목 → 라목 개정>

라. **다**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**가중처분의 적용 차수**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**높은 차수**를 말한다)의 **다음 차수**로 한다.

Page 387. 제8장 문제24번. 해설 및 정답
오류 수정 전, 정답 ②

① 2류 중 분말상태·인화성고체 외의 것 : 내화구조
② 2류 중 분말상태·인화성고체 : 가벼운 불연재료
③ 3석유류 : 내화구조
④ 6류 모두 : 내화구조

오류 수정 후, 정답 ②, ③ (복수정답)

① 2류 중 분말상태·인화성고체 외의 것 : 내화구조
② 2류 중 분말상태·인화성고체 : 가벼운 불연재료
③ 3석유류 : 가벼운 불연재료
④ 6류 모두 : 내화구조